

## 大田直轄市保健環境研究院設置 및 運營條例案

議案 番號	93
----------	----

提出年月日 : 1992. 2. 19

提 出 者 : 大田直轄市長

### 1. 提案理由

地域環境 및 市民保健衛生에 관한 試驗·檢査 및 研究業務를 遂行하기 위하여 保健環境研究院을 設置하여 運營하고자 함.

### 2. 主要骨子

가. 位置는 大田直轄市 管內로 함(案 第2條)

나. 業務는 아래의 業務를 管掌함(案 第3條 第1項)

- (1) 傳染病豫防法에 의한 傳染病, 後天性 免疫缺乏症豫防法에 의한 後天性免疫缺乏症, 寄生蟲疾患豫防法에 의한 寄生蟲 및 其他 傳染性 疾患과 集團疾病 發生에 대한 診斷·檢査·試驗·調査·研究에 관한 事項
- (2) 藥事法에 의한 醫藥品·醫藥部外品·化粧品 醫療用具 및 衛生用品, 麻藥法에 의한 麻藥, 向精神性醫藥品管理法에 의한 向精神性醫藥品, 大麻管理法에 의한 大麻, 食品衛生法에 의한 食品·添加物·器具·容器·包裝 및 農産物의 農藥殘留量, 農産物衛生處理法에 의하여 檢査를 받아 流通되는 食肉, 公衆衛生法에 의한 飲用水·水處理劑·洗滌劑 기타 衛生用品 및 장난감, 溫泉法에 의한 溫泉水의 檢査·試驗·調査·研究에 관한 事項
- (3) 大氣環境保全法에 의한 大氣·惡臭, 水質環境保全法에 의한 水質·土壤·農藥殘留量, 騒音·振動規制法에 의한 騒音·振動, 廢棄物管理法에 의한 一般廢棄物·産業廢棄物·汚染淨化施設·畜産廢水淨化施設·廢水處理施設·쓰레기 處理施設등에서 排出되는 放流水, 海洋汚染防止法에 의한 海洋汚染 및 有害化學物質管理法에 의한 有害化學物質등 檢査·試驗, 調査, 研究에 관한 事項

2 (第9回 臨時會 - 文教.社會 第1次 別添)

- (4) 管轄區域안의 保健·環境 關聯機關의 檢査業務에 대한 技術的인 指導·點檢에 관한 事項
- (5) 管轄區域안의 保健·環境 關聯機關의 檢査要員의 訓練에 관한 事項
- (6) 其他 公衆保健의 向上 및 環境保全을 위하여 必要한 檢査·試驗·調査·研究에 관한 事項

다. 條例案 第3條 第1項 第4號 및 5號에 該當되는 保健·環境 關聯機關은 保健醫療院,保健所(支所包含)및 保健診療所,上水道管理, 下水 및 糞尿處理機關, 其他 市長이 必要하다고 指定하는 機關으로 함(案 第3條 第2項)

라. 院長은 地方保健研究官 또는 地方環境研究官으로 함(案 第4條)

마. 試驗·檢査를 依頼하고자 하는者는 試驗依頼書와 檢體 所要量을 研究院長에게 提出하고, 研究院長은 試驗依頼接受證을 交付하여야 함(案 第6條)

바. 手數料 및 實費는 保健社會部 長官 또는 環境處 長官이 定하는 基準에 따라 條例로 定한바에 의하여, 當該出張公務員의 旅費는 大田直轄市旅費條例에 의하여 徵收하되 大田直轄市 收入證紙로 事전에 納付하여야 함(案 第7條)

사. 檢査·試驗등을 實施하였을때는 그 結果를 依頼者에게 交付하되, 郵便으로 送付하고, 別途 寫本發給要請이 있을때는 手數料를 徵收한後 發給함(案 第8條)

- 아. 國家機關이나 公共團體 또는 個人이 行政施策上 必要에 의하여 檢査·試驗등을 依賴한 경우와 不正食品 및 醫藥品 團束, 法定傳染病豫防, 排出施設에 대한 定期 環境汚染度 調査, 搜查上 必要한 경우, 他法令에 手數料 減免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手數料를 減免함(案 第9條)
  
- 자. 試驗·檢査등이 不可能한 事項에 대하여는 試驗·檢査·依賴에 應하지 아니할 수 있음(案 第10條)
  
- 차. 檢査·試驗을 하기 위하여 提出된 檢體와 納付한 手數料는 返還하지 않음. 단, 試驗을 행하여도 그 使用價値가 남아있는 檢體는 試驗이 끝난 후 7日以內에 試驗依賴人의 返還請求가 있을 때는 返還함(案 第11條)
  
- 카. 試驗結果는 試驗依賴目的以外的 廣告 및 宣傳等에 利用하거나 容器 및 包裝에 이를 表示할 수 없음(案 第12條)
  
- 타. 試驗依賴人이 試驗目的以外的 用度로 利用하였을 경우에는 試驗成績書등의 返還을 要求하고, 그 試驗成績書의 原本을 抹消할 수 있으며, 抹消를 한때에는 抹消당한자의 姓名, 抹消理由, 試驗을 한 物品名等を 公告하여야 함(案 第13條)

### 3. 參考事項

가. “保健環境研究院” 設置關聯法規

- 保健環境研究院法 第2條
- 地方自治法 第104條

나. “保健環境研究院 廳舍確保에 따른 公有財産 管理計劃” 承認

- 承認 年月日 : 1991. 11. 27(第6回 市議會 臨時會)
- 位 置 : 大田直轄市 西區 탄방동
- 建物面積 : 302 평 (997.3m<sup>2</sup>)

다. “試驗裝備 定數物品” 承認

- 承認 年月日 : 1991. 11. 27(第6回 市議會 臨時會)
- 淨水 承認 品目 : 61種 203點

라. “保健環境研究院 設置” 承認

- 承認申請年月日 : 1991. 9. 19
- 承認 年月日 : 1992. 2. 6
- 承認 機關 : 內務部
- 承認 內容
  - 機 構 : 1課 2部 2係 7科
  - 定 員 : 44名(研究職 32名, 一般職 및 技能職 12名)
  - 院 長 : 地方保健研究官 또는 地方環境研究官

마. 所要豫算 確保

- 裝備購入費
  - 總 所 要 額 : 2,510百萬元
  - 確 保 額 : 1,000 " ('92當初豫算 : 地方費 960 國費 40)
  - 不 足 額 : 1,510 " ('92追更豫算 確保豫定)
- 廳舍賃借料 — 600百萬元(豫備費 使用)

마. 忠淸南道研究院 依賴件數 및 手數料 支出現況

年 月 日	檢査依頼件數	手數料 支出額	檢査依頼件數 및 增加率	
			件 數	增加率
'89	19,202 건	120,000千원	— 件	— %
'90	37,766	120,000	18,564	97
'91	34,675	190,000	△3,091	△8

사. 他市道 : 既設置

區 分	釜 山	大 邱	仁 川	光 州	忠 南
設置年月日	87.12.31	86.8.14	87.12.31	87.12.31	52 .5. 9
人 員	77명	55명	50명	38명	65명

## 대전직할시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안

제1조(설치) 지역환경 및 주민보건위생에 관한 시험검사 및 연구를 하기위하여 대전직할시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둔다.

제2조(위치) 연구원은 대전직할시 관내에 둔다.

제3조(업무) ①연구원은 다음 업무를 행한다.

1.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전염병,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 의한 후천성면역결핍증, 기생충질환예방법에 의한 기생충 및 기타 전염성 질환과 집단 질병발생에 대한 진단 시험,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2.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학품, 의료용구 및 위생용품, 마약법에 의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 대마관리법에 의한 대마,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및 농산물의 농약잔류량, 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하여 검사를 받아 유통되는 식육, 공중위생법에 의한 식용수, 수처리제, 세척제 기타 위생용품 및 장난감, 온천법에 의한 온천수의 검사, 시험,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3.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 악취,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수질, 토양, 농약잔류량,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소음, 진동,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일반폐기물, 산업폐기물, 오수정화시설, 축산물정화시설, 분뇨처리시설, 쓰레기 처리시설등에서 배출되는 방류수,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해양오염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해화학물질등의 검사, 시험,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4. 관할구역안의 보건,환경 관련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기술적인 지도, 점검에 관한 사항
5. 관할구역안의 보건, 환경 관련기관의 검사요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6. 기타 공중보건의 향상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검사, 시험,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건·환경 관련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건의료원, 보건소(지소포함) 및 보건진료소
2. 상수도관리, 하수 및 분뇨처리기관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기관

제4조(원장) ① 연구원에 원장을 두며, 지방보건연구원 또는 지방환경연구원으로 보한다.

②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조(공무원) 연구원에 원장 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6조(검사, 시험의뢰) ① 연구원에 검사, 시험, 분석, 감정 및 소분봉합(이하 “검사, 시험등”이라 한다)을 의뢰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험의뢰서와 “별표1”에 정한 시험용 검체 소요량을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기타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구애됨이 없이 공문서에 의하여도 가능하다.

②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시험등을 의뢰받았을 때에는 접수일자와 처리기간이 명시된 별지 제2호서식의 시험의뢰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의하여 기일내에 시험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수수료 및 징수방법) ① 검사, 시험등의 수수료는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별표에 기재되지 아니한 품목은 별표에 규정된 내용과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는 검사, 시험등을 의뢰할 때에 대전직할시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로 납부하여야 하며, 사본 청구시에도 또한 같다.

③ 검사, 시험등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현지출장을 요하는 경우에는 당해출장공무원의 여비 및 시험기구 운반에 소요되는 실비를 수입증지로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여비는 “대전직할시여비조례”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8조(시험성적서 교부) ① 제6조에 의거 검사, 시험등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3호 또는 4호서식”의 시험성적에 의하여 그 결과를 의뢰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험성적은 확정후 발급당시의 주소, 성명등 오자, 탈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정정을 하지 못한다.

③ 시험성적서는 의뢰자의 원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한다.

④ 시험성적서 발급후 의뢰자로 부터 사본 발급요청이 있을시는 “별표2”에 정하는 수수료 징수후 발급한다.

제9조(수수료 감면) 수수료 감면은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이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검사, 시험등을 의뢰한 경우와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경우로서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부정식품 및 의약품 단속을 위한 경우
2. 법정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3. 배출시설에 대한 정기 환경오염도 검사
4.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5. 타 법령에 의거 수수료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

제10조(검사, 시험등 불응) 검사, 시험등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검사, 시험등의 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검체 및 수수료의 처리)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검체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시험을 행하여도 그 사용가치가 남아 있는 검체는 시험이 끝난후 7일 이내에 시험의뢰인의 반환창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시험결과의 광고등 금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결과는 시험의뢰 목적 이외의 광고 또는 선전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용기, 포장등에도 이를 표시할 수 없다.

제13조(성적원본의 말소) ① 원장은 시험의뢰인이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시험성적서의 반환을 요구하고 그 시험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한 때에는 말소당함자의 성명과 말소이유, 시험을 한 물품명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199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험용검체 의뢰수량 및 시험 처리기간

(별표 1)

시험종별	처리기간	시험용검체소요량
약 품 류	15 일	1. 포장단위 2개 이상 2. 정제 100정 이상 3. 약제 500그램 이상
식 품 류	12일 (단통조림 식품 및 자기품질 규격검토 20일)	1. 포장단위 10개 이상 2. 중량 1키로 이상
정 당 용 료	12 일	1. 포장단위 10개 이상 2. 물 1리터이상 3. 중량 500그램 이상
수 질 관 계	7 일	1. 물 3리터 이상
공 역 관 계	15 일	1. 출장 조사
약 수 (폐 수)	15 일	1. 물 3리터 이상
생물약식 세균 검사	10 일	
임상약식 세균 검사	10 일	1. 약품 20씨. 씨 2. 포장 10개 이상 3. 식중독 500그램 4. 대변 20그램 5. 소변 100씨. 씨 6. 혈액 5씨. 씨

## 검사, 시험등 수수료

(별표 2)

## 1. 미생물학적 및 병독학적 검사

구	분	수 수 료	비 고
영색검정검사		500	
전자현미경에 의한 관찰시험 (다만, 사진 촬영시에는 1매당 1,500원씩 추가)		3,100	
장내 세균검사		3,800	
세균 감수성 검사		1,500	
결핵균 배양 및 동정 검사		3,400	
동물에 의한 병독분리 동정검사		14,650	
유정란에 의한 병독분리 동정시험		16,350	
조직배양에 의한 병독분리 동정시험		7,850	
항원 검출검사		2,000	
염기성균 검사		8,200	
디프테리아균 및 백일애균 검사		3,300	
대장균 검사		5,500	
일반세균 검사		4,400	
유산균수 검사		5,500	
대장균수 검사		5,500	
식중독 검사			
가. 살모넬라 검사		6,600	
나. 병원성 대장균 검사		6,600	
다. <i>Yersinia enterocolitica</i> (에르시니아엔테로콜리티카)		6,000	
라. <i>Vibrio parahaemolyticus</i> (장염비브리오)		6,000	
마. <i>Clostridium perfringens</i> (클로스트리듐페르프링겐스)		8,800	
바. <i>Bacillus cereus</i> (바실루스세레우스)		6,000	

사. Staphylo aureus	(황색포도상 구균)	6,000	
약. Clostridium botulinum	(클로스트리움 보툴리눔)	8,800	
진균수 검사		5,000	
진균확인 검사		5,000	
진균 분리동정 검사		8,800	
보체결합 반응검사		2,600	
혈구 응집(HA)검사		3,500	
혈구 응집억제(HI)검사		770	
조직배양 종확검사		5,000	
동물에 의한 종확검사		15,150	
영광광체 검사		3,200	
표소면역 분석검사		3,200	
전기영동 또는 침강반응에 의한 항원검출 검사		2,600	

2. 기생충 검사

구	본	수 수 료	비 고
열징검사		300	
살충 제시임 (약의 시험종목에 따라 설비징수)			
기생충 검사		300	대변, 구담
디스토마떡내양검사		300	혈액으로
원충류 배양검사		1,500	구본
어류 및 갑각류 디스토마검사		3,000	
외출한 산란요과 시험		3,000	

3. 소독약품 및 소독기구에 관한 시험

구	수	비 고
소독약품 및 소독기구의 살균력 시험	6,000	
살충제 감수성 시험	14,000	
살충제 살내 요과시험	15,000	
살충제 산류 요과시험	20,000	
약의 효력평가 시험	23,500	

## 4. 의약품 및 화장품류의 시험

구	수 수 료	비 고
<p>약전시험</p> <p>시험기준 및 시험방법 검토시험 (변경에 대한 검토 시험 포함)</p> <p>수출인상 제제 검증</p> <p>양생물질 제제의 역가시험 (화학적 시험)</p> <p>양생물질 제제의 역가시험 (생물학적 시험)</p> <p>발열성 물질시험</p> <p>안진도 시험 (일반제제)</p> <p>무균 시험 (직접법)</p> <p>생근시험 (엠프란핀티법)</p> <p>생근수 시험</p> <p>유산균 제제시험 (정량)</p> <p>생약제제시험 (일성분 정성)</p> <p>생약제제시험 (일성분 정량)</p> <p>아이노산제 시험 (일성분 정성)</p> <p>아이노산 단일성분 제제시험 (일성분 정량)</p> <p>복합아이노산의 제제의 정량시험 (중산성 및 염기성 아이노산)</p>	<p>약전에 수록되어 있는 시험항목별로 산정</p> <p>30,000</p> <p>3,000</p> <p>5,000</p> <p>9,000</p> <p>5,500</p> <p>1,700</p> <p>3,000</p> <p>10,000</p> <p>4,500</p> <p>4,500</p> <p>1,800</p> <p>5,000</p> <p>500</p> <p>4,000</p> <p>30,000</p>	

구 본	수 수 료	비 고
박타민제 시험 (일성본 정성)	1,200	
박타민제 시험 (일성본 정량)	3,000	
박타민제 생물학적 시험 (일성본)	9,000	
봉해도 시험	700	
향정신성의약품, 마약 및 대마시험 (일성본 정성)	2,000	
향정신성의약품, 마약 및 대마시험 (일성본 정량)	5,000	
향정신성의약품, 마약 및 대마시험 (미지성본 일성본)	5,000	
칼뿔서 수분시험	6,000	
주사제 유리용기 시험 (무색)	1,400	
주사제 유리용기 시험 (착색)	4,000	
수액용 고무마개 시험	30,800	
수액용 플라스틱용기 시험	44,000	
연수린 양량 시험	110,000	
요소제 시험 (일양목)	3,000	
올몬 제제시험 (일성본 정성)	1,000	
올몬 제제시험 (일성본 정량)	5,500	
기탁의약품 시험 (일성본 정성)	1,000	
기탁의약품 시험 (일성본 정량)	3,000	
양량근일성 시험	30,000	
용출시험 (일성본)	20,000	
손도시험 (일양목)	1,300	
와장품시험 (일성본 정성)	1,000	

구	본	수 수 료	비 고
확장품 시험 (일성본 정량)		3,000	
확장품 시험 (순도일망목)		1,300	
금속상이물시험 (안연고제)		1,000	
극한점도 시험		1,300	
중량 면착시험		1,300	
관련물질 시험		1,300	
이물 시험		1,300	
벽중시험		1,300	
강열 잔본시험		1,300	
중량산유물 시험		1,300	
연성도 시험		1,300	
용점 시험		1,300	
유확성 및 유확안정성 시험		1,300	
비선광도 시험		1,300	
내용량 시험		1,300	
미생물 오염시험		29,700	
망연성 시험		65,600	
독성시험		1,700	
평상시험		500	
계산도 시험		3,000	
요농시험		3,000	
경도시험		1,300	

구 분	수 수 료	비 고
업도시험	1,300	
P·H 시험	1,300	
실용량 시험	1,300	
본말기제본시험	1,300	
치약상태시험	1,300	
음착력 시험	3,000	
입자도 시험	1,300	
불용성 이립사 시험	1,300	
내용 압력시험	1,300	
중부 시험	1,300	
소포력 시험	1,300	
용광도 시험	1,300	
굴질률 시험	1,300	
유연물질 시험	1,300	
이스타민 시험	9,000	
<p>※ 상상양목은 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p>		

## 5. 식품,식품첨가물 용기등 시험

구	본	수 수 료	비 고
식품및 식품첨가물 규격기준 및 시험방법 검토시험 (변경에 대한 검토시험 포함)식품		30,000	
가.	P H 시험	1,100	
나.	비중시험	1,100	
다.	굴절률 시험	1,100	
라.	색도 시험	1,100	
마.	전광도 시험	1,100	
바.	가스압 시험	1,100	
사.	영양중백제 시험	1,100	
아.	미량 영양성분 (비타민 A, B <sub>1</sub> , B <sub>2</sub> , C, 니이아신, 칼슘, 인, 철)시험(일함목당 정량)	6,000	
자.	잔류농약(유기인제, 유기염소제중)	20,000	
차.	독소(아플라독소)시험(정성시험)	20,000	
카.	독소(아플라독소)시험(정량시험)	25,000	
타.	전분유량생물질 검출시험	4,000	
따.	상기 이외의시험(일함목당)	3,000	
첨가물			
가.	확인시험(일함목당)	1,300	
나.	순도시험(일함목당)	3,000	
다.	건포 검량시험	2,000	
라.	강열잔류 시험	2,000	
마.	수분시험(칼렛서법)	4,400	

구	본	수 수 료	비 고
바. 정량시험		4,000	
사. 상기이외의시험(일항목당)		4,000	
기구, 용기 및 포장			
가. 메놀 시험		1,100	
나. 총금속 시험		1,100	
다. 영광중백제 시험		1,100	
라. 미, 브, 씨 규격시험(1점당 7항목 정성 1항목)		22,000	
박. 상기 이외의시험(일항목당)		3,000	
연구료			
가. 총금속 시험		1,100	
나. 색소시험		1,100	
다. 상기 이외의 시험(일항목당)		3,000	
중심소재(야채, 과일, 식기용)			
가. 영광염료 시험		1,000	
나. 상기이외의 시험 (일항목당)		4,000	
* 다만 전항목마다 성상항목은 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 6. 의료용구 및 위생용품

구	본	수 수 료	비 고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 검토 (병변경에 대한 검토시험 포함)		30,000	
먹임용구 콘돔시험 (1회시험)		500	
기아제(얼근된 것은 무균시험 수수료 별도추가)		3,800	
봉대 (얼근된 것은 무균시험 수수료 별도추가)		3,800	
탈지연 (얼근된 것은 무균시험 수수료 별도추가)		2,600	
반창고 (얼근된 것은 무균시험 수수료 별도추가)		3,800	
주사기		3,300	
일회용 주사기(플라스틱)		38,500	
주사침		2,700	
일회용 수열수액샐트		27,500	
열액샐트		55,000	
수술용 고무장갑 (얼근된것은 무균시험 수수료별도추가)		7,700	
삼각근		1,500	
스티커넷		5,000	
광목봉대(어스킨)		2,500	
석고봉대		7,200	
탄력봉대		3,500	
압박대		18,000	
복부용 매트		13,200	
땀겨아재		14,000	
의료용 X선 장치 (촬영전용)		36,000	
의료용 X선 장치 (촬영용 두시경용)		54,000	

구	본	수 수 료	비 고
	의료용 x선 발생기 및 콘덴서식 x선 장치	25,000	
	치과용 x선 발생장치	22,000	
	x선 장치 누설선량	10,000	
	x선장치 가동조리개 또는 조사동차이	3,000	
	x선장치 x선조사조건	15,000	
	x선장치 선량선질	2,000	
	x선 장치 조짐같이	3,000	
	생리처리용 위생대	15,600	
	수술용 마스크 (보자기형)	13,600	
	복막관류설 (스타일렛포함인 경우)	50,000	
	복막관류설 (스타일렛제외인 경우)	48,000	
	Digital personal alarm dosimeter, or (integrated type)	2,500	
	(작산형 개인피폭선량 경보계)		
	Digital alarm dosimeter	15,000	
	(설정형 피폭선량 경보계)		
	(Setting type)	Range	
	비음수심견제용합사	7,600	
	보건용 마스크	9,100	
	의약품동 건조광량	1,300	

7. 인체감염의 원인이 되는 동물 가검물 시험

구	본	수 수 료	비 고
연중 및 연중류 검사		2,000	
디스토마유충 검사		4,500	
메디스토마 열침막적 시험		6,500	
살란제 요과시험		5,000	

8. 음료수에 관한 사항

구	수 수 료	비 고
정오수		
0. 세군학적 검사	4,000	
0. 이화학적 검사	2,000	
간이상수도		
0. 세군학적 검사	4,000	
0. 이화학적 검사	34,000	
기타 (상업용 정오수 (지아수) 및 시지역 소재 정오수 등)		
0. 세군학적 검사 (수수료액표 제1항 시험항목		
수수료액 액산)		
0. 이화학적 검사 (수수료액표 제9항 해당시험 항목		
수수료액 액산)		

9. 환경분야에 관한 시험

구	본	수수료 (원)	비 고
1) 가스시험 시험			
0	암모니아	2,960	
0	일산화탄소	3,490	
0	염화수소	4,090	
0	염소	3,340	
0	황산화물	2,520	
0	질산화물	2,120	
0	아황화탄소	4,500	
0	포름알데이드	4,090	
0	황화수소	5,030	
0	불산화합물	5,430	
0	시안화합물	3,350	
0	취소(브롬)화합물	3,880	
0	벤젠	4,100	
0	페놀화합물	4,790	
0	비소화합물	3,320	
2)	먼지시험	1,150	
3)	가스 및 먼지중 중금속 시험	성분당 16,290 (동일시험 2성분 이상분석시 1,200 원씩 추가)	
0	비소화합물, 카드뮴화합물, 연화합물, 크롬화합물, 동화합물		
4)	약해시험	2,200	

구	수 수 료	비 고
5) 자동자 배출가스 성분시험		
0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성분당 1,260	
0 질소화합물, 매연	1,150	
6) 소음진동 측정		
0 비기록 측정	1,260	
0 기록측정(소음시험)	2,200	
0 기록측정(진동시험)	1,260	
0 대역분석	3,300	
7) 유류시험		
0 연료중 유황함유량 분석	3,440	
8) 배출원 오염물질 시험		
0 분 전	7,330	
0 비산분진	6,430	
0 매 연	570	
9) 심상시험		
0 수소이온농도	380	
0 온 도	250	
0 맛, 냄새, 투시도, 전도도, 색도	380	
10) 역상시험		
0 총경도, 알칼리도, 산도, 광산산도, 유리탄산, 탄산	2,000	
이온		

구	본	수 수 료	비 고
11) 용액성 성분시험 0 강열잔분, 용매잔분, 부유물질, 증발잔유물, 과당 간산칼륨 소비량, 잔류염소, 염소이온, 유리잔류염소		성분당 2,000	
12) 노달 - 석산 추출물질 시험		3,790	
13) 이온 시험 0 인산이온(인산염) 염소이온(염산염), 황산이온 (황산염)		성분당 1,000	
14) 미산확성 물질시험			
0 화학적 산소 요구량		2,530	
0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3,790	
15) 용존 산소시험		2,000	
16) 암질소성분 시험 0 총질소, 유기성질소, 암모니아성질소, 아질산성질소, 질산성질소		성분당 2,000	
17) 유액성 물질시험 0 시안, 메놀, 암성세제, 불소이온		성분당 2,530	
18) 농약성분 시험		" 4,420	
19) 이량금속 시험		" 3,790	
20) 알칼수은시험, 퍼·씨·비시험, 퍼·씨·퍼시험, T-H-C		" 3,790	
21) 세균시험			
0 일반세균		3,000	
0 대장균		3,790	

구	본	수 수 료	비 고
22)	징와조 기능시험(제거율 시험)	3,790	
23)	살충살시제 및 독극물 시험		
0	확인시험	3,300	
0	망량 시험	4,420	
0	손도 시험	3,300	
0	내용량(중량편차) 시험, 내용압력시험, 유와성 및 유와안정성시험	성본당1,000	
24)	농식물의 성분시험(대기오염)		
0	납와압물, 아연와압물, 구리와압물, 카드뮴와압물, 당근와압물	성본당4,420	
0	수용성 유와와압물, 불소산와압물	" 3,000	
25)	동식물의 성분검사(수질오염)		
0	수은, 카드뮴, 아연, 구리, 니켈, 납, 비소, 질, 망간, 크롬와압물	" 4,420	
0	피.씨.비 시험	" 3,740	
26)	열액, 손톱, 뇨, 어리카락등의 중금속시험)		
0	수은와압물, 카드뮴와압물, 동와압물, 납와압물, 아연와압물, 크롬와압물	성본당3,790	
27)	독극물 기준 시험방법 검토시험	25,300	

10. 시험성적서 사본등 교부수수료 액표

구 본	수 수 료	비 고
시험성적서 사본 1통	100	
검토결과 통지서 1통	1,500	
외약품동 통관예정보고서 접수필증 1통	1,000	
외국어 번역문	200	

“별지 1호”

시 험 의 퇴 서

시 공 품 명	시 험 목 적	검 체 수 량	시험성적서 용도및대수	검 사 양 목	수수료	비 고 (제조번호및년월일등)

상기 시공품을 시험하여 주시기 수수료 별첨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자 주 소 :  
 업 소 명 :  
 성 명 : (인)  
 전 화 : ( )

보 건 안 경 연 구 원		결 재	원 장
접수 일시	년 월 일 시 분	지 시 사 양	년 월 일까지 처리할것
접수 번호	제 호		
주 무 사			
담 당 자			
위임근거			

대전직할시보건 환경연구원장 귀하

※ 수수료는 대전직할시 수입증지로서 이면 또는 별지에 첨부할것.

“별지 2호”

번호 \_\_\_\_\_

시험역외접수증

건명		
수수료	수업종지	원정
처리기간	년 월 일	
	* 시험상 사정에 따라 기일이 경과되는 경우에는 시 신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년 월 일

귀 아

대전직업시 보건환경연구원장

“별지 3호” (보건분야용)

시 험 성 적 서

보 연

수 신

관련 번호		제조 번호 제조년월일	
가검 용명		수거 장소	
시험 항목		시험 목적	
의 피 자		수거년월일	
제 조 자		접수번호및 접수년월일	제 오 ( )

위와 같이 당원에 제출한 가검물에 대하여 시험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 적 :

년 월 일

대전직할시보건환경연구원장

“별지 4호” (환경분야용)

시 험 성 적 서

보 연

수 신

1. 출원사항 (접수번호)

의뢰시(거)		접수년월일	년    월    일
검사종목		지    역	
상    모		업    종	
소    제    지		대 표 자	

2. 검사결과

위와 같이 검사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대전직할시보건환경연구원장